



( 뒤 쪽 )

소유자의 주의사항

1.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관청(신규등록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지 관할관청)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2.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,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